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탄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597

발의연월일: 2020. 10. 21.

발 의 자:이탄희·정춘숙·김승원

윤영찬 · 장혜영 · 홍정민

고민정 • 박찬대 • 박광온

이해식 · 강준현 · 황 희

진성준 · 정정순 · 오영환

최혜영 • 이용우 • 남인순

우원식 · 김상희 · 김영배

이용빈 • 윤영덕 • 홍기원

김성환 · 장경태 · 주철현

고용진 • 권인숙 • 황운하

이수진(비) · 강훈식 · 이소영

유기홍 • 민형배 • 김철민

강병원 · 김경만 · 유정주

의원(3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, 성 비위를 저지른 학급담당교원(담임)이 강등, 정직, 감봉, 견책, 불문경고 등의 경징계를 받고, 다시 학교로 돌아가 담임 보직을 유지한다고 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상황임.

이에 지난 10년간 성 비위 교원 총 1,093명 중 총 524명(48%)이 교

단으로 복귀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, 이 중 학급담당교원은 학급만 바꿔서 계속 담임 보직을 유지하고 있음.

경남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경우, 2019년 본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6학년 학생의 옷에 손을 넣거나, 엉덩이와 배, 허벅지를 만지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 한 사실이 징계위원회 의결을 통해 일부 인정되었음. 그럼에도 불구하고 '강등'이라는 경징계를 받고, 2020년 7월부터 같은 학교로 돌아가 담임 보직을 유지한 채 재직 중임.

성 비위 사건에서 가장 시급하게 지켜져야 할 원칙은 가해 교사와 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임. 성 비위 교사가 다시 피해 학생이 있는 학 교의 담임으로 복귀하면, 또 다시 2차, 3차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. 무엇보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높은 상황 임.

실제로 경기도의 한 사립 고등학교 담임교사의 경우, 2016년 본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여학생들의 손을 잡거나, 허벅지를 때리는 등의 불 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여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받고 다시 교단으로 복귀함. 그러나 2017년부터 4년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중, 2019년 또 다시 다른 반 여학생들을 성추행하는 비위를 저질러 결국 사건이 재 발하고 나서야 해임된 바 있음.

이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학생에 대한 「양성평등기본 법」 제3조제2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징계처분 이후 다시 직을 부여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급담당교원의 보직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(안 제66조의6 신설).

법률 제 호
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6조의6(보직관리의 원칙) ①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학생에 대한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제2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 이후 다시 직을 부여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별한사정이 없으면 학급담당교원의 보직을 부여할 수 없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 이후 다시 직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10년 간 해당 교원에 대하여 부여하는 보직을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제66조의6(보직관리의 원칙) ①
	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
	유가 학생에 대한 「양성평
	등기본법」 제3조제2호의 행
	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
	계처분 이후 다시 직을 부여
	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
	별한 사정이 없으면 학급담
	당교원의 보직을 부여할 수
	없다.
	②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 이
	후 다시 직을 부여하는 경우
	에는 학교의 장은 10년 간
	해당 교원에 대하여 부여하
	는 보직을 교육청에 보고하
	<u> 여야 한다.</u>